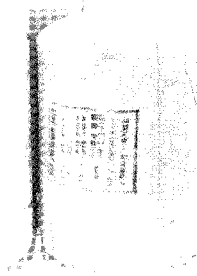


## 확대되는 제도

# 수산물 양식용 부자 EPR 대상 품목으로

환경부담금 대상 무목으로 2008년 7월부터 자발적협약을 통해 재활용이 추진되던 수산물 양식용 부자가 2011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 대상 품목으로 진입한다.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.



### 1. 양식용 부자의 적용 법률

기간	~ 2008. 6	~ 2010. 12. 31	2011. 1. ~	비고
적용	폐기물 부담금	폐기물 부담금 자발적 협약 대상	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(EPR)	자축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8호

※수산물 양식용 부자만 해당. 방유(오탁방지용)부자 등은 제외됨.

### 2.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

-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종전에는 제품 및 포장재의 생산 판매까지 책임을 지고 사용후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전가시켰으나 EPR에서는 정부가 생산자에게 매년 일정한 재활용의무를 부과하여 재활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
- 업무 흐름도

업무	관계법	일자
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	법 제17조 제1항	전년도 12월
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	법 제18조 1항	당해 년도 1월말
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	법 제18조 1항	당해 년도 2월말
재활용의무이행	법 제 16조	당해년도
제품 · 포장재 출고실적 제출	시행령 22조	다음 년도 4월 15일
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제출	법 제18조 2항	다음 년도 4월말
재활용 부과금 고지	법 제19조	다음 년도 6월말
재활용 부과금 납부	법 제19조	다음 년도 7월 20일

#### - 실시 시기

- ▶발포합성수지 포장재: 2003년부터
- ▶수산물 양식용 부자: 2011년부터



### 3. 양식용 부자의 EPR 전환에 따른 일반사항 및 변경사항

#### 3.1 일반 사항

- EPR 의무대상자 정의

구분	내용	대상자
제품(부자)	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	제조, 수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

- 재활용 실적 인정 대상

구분	제품(양식용 부자)	포장재
실적 대상	양식용 부자	농수축산물 상자, 가전포장재 등의 포장재
비대상	포장재, 단열재	부자, 단열재, 부품 포장재 등

- 미이행 부과금

구분	양식용 부자	포장재(EPS)
재활용 기준비용	627원/kg (수집운반비: 300원/kg)	317원/kg
부과금(미이행정도에 따라)	815원/kg까지	412원/kg까지

#### 3.2 변경사항

- 이행 결과 보고

구분	자발적 협약	EPR
보고 기한	익년 2월 말	익년 4월말

-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혼입비율 조사

구분	자발적 협약	EPR
조사 주체	한국환경공단	해당 공제조합

- 재활용사업자 기준, 재활용 실적 인정 기준, 혼입비율 조사 기준, 서류 작성 및 보관 등은 동일

3.3 2011년도 의무율 : 27.7%

